

| |
|---------------|
| 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|
| 2018. 2. 22. |

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

2018. 2. 22.

행정안전부

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(지침 p.55)

가. 봉급월액(영 제29조의3)

-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(아래에 해당하는 공무원)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.
 -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(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의3)
 -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(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8조의15제2항)
 - 시간제근무공무원(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 제11조제1항)

나. 봉급의 감액지급(영 제25조, 제26조, 제27조, 제28조)

- 징계처분, 결근, 무급휴가, 휴직, 직위해제 등 봉급의 감액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9조의3에 따라 책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영 제25조 내지 제28조에서 정한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함.
- * 단, '16.6.30.부터는 「지방공무원법」(법률 제13634호) 제71조,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'16.6.30.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 그 처분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. ('16.6.30.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)

예시

1. 6급 10호봉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이 '12.3.1.~'12.12.31.까지 주당 30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시간제근무 기간의 봉급지급은 방법은?
 -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6급 10호봉 봉급월액의 3/4을 지급함.

※ 6급 10호봉 봉급월액 × 30시간/40시간

□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수당등 지급 (지침 p.362)

1) 적용대상 :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3 및 제38조의15 제2항,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

2) 수당 등의 종류 : 전일공무원의 수당과 같음.

3) 지급기준

전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. 단,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, 정액급식비는 출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.

4) 지급액의 산정방법

가) 가족수당, 가족수당가산금, 자녀학비보조수당

- 지급액 =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

예시

○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부양가족 4명(배우자, 직계 존속1명, 자녀2명)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은?

$$\hookrightarrow 140,000원 = 40,000원(\text{배우자}) + 20,000원(\text{직계존속}) + 80,000원(\text{자녀2명})$$

나) 육아휴직수당

- 지급액 =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월봉급액의 40%

* 단, 상한액 월 100만원 및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

다) 정근수당

- 지급액 = 근무연수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 월봉급액의 0%에서 50%까지 차등지급(영 별표2)

- 가산금 = 근무연수에 따라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(영 별표 2)

* 이때, 근무연수는 전일근무 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

* 지급대상기간 중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등으로, 시간선택제 등에서 전일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.

$$- \text{지급액} = \frac{\text{전일근무시} \times \frac{\text{전일근무월} + (\text{시간제근무월} \times \text{주당근무시간}) / \text{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상 주당근무시간}}{6\text{월}}}{\text{지급액}}$$

- 가산금 = 근무연수에 따라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(영 별표 2)

* 이 때, 근무연수는 전일근무 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

예시

- 7.1. 기준 봉급표상의 월봉급액 200만원인 경력 10년이상 된 공무원이 1.1.~3.31.까지 3개월을 주당 1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를 하고, 4.1.~6.30.까지는 전일 근무한 경우 정근수당 지급 방법
 - ☞ 정근수당 지급액
 - (전일근무시 지급액×3월/6월)+(전일근무시 지급액×3월/6월×15/40)
 - ☞ 687,500원 : [(200만원×0.5)×3월/6월] + [(200만원×0.5)×3월/6월×15/40]
- 전일근무한 경력이 9년 9월('07.7.1.~'16.3.31.)이고, 주당 1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 경력이 3월('16.4.1.~'16.6.30.)이며, '16.7.1. 기준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이 200만원인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방법
 - ☞ 근무연수
 - 10년(전일근무 경력 9년 9월 + 시간선택제근무 경력 3월)
 - * 시간선택제근무 경력도 근무연수 산입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 근무 경력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
 - ☞ 정근수당 지급액
 - (전일근무시 지급액×3월/6월)+(전일근무시 지급액×3월/6월×15/40)
 - ☞ 687,500원 : (200만원×0.5)×3월/6월)+(200만원×0.5)×3월/6월×15/40

라)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

- 지급액 = $\frac{\text{전일근무}}{\text{공무원지급액}} \times \frac{\text{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주당 출근 근무일수}}{\text{『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』상 주당 출근근무일수}}$
- * “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주당 출근근무일수”는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될 때 정하여진 출근근무일수를 말한다.

예시

-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지정된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지급액은?
 - ☞ 104,000원(10원 단위 이하는 절사) = 130,000원 × (4일/5일)

마) 연가보상비

(1)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에 의한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
* 연가보상비

: 12월 31일(또는 퇴직일 전일) 현재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월봉급액의 $86\% \times 1/30 \times 1/(1\text{일당 근무시간}) \times \text{연가보상시간}(140\text{시간 이내})$

$$\cdot 1\text{일당 근무시간} = \frac{\text{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}}{\text{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상 주당 근무시간}} \times 8\text{시간}$$

- *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“연가보상시간” 계산은 「공무원임용규칙」 제12장(시간선택제 근무)을 따름
- *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은 연가보상비를 12월 31일(또는 퇴직일 전일) 기준으로 연 1회 지급함.

예시

- 월봉급액이 175만원이고 주당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연가보상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
 - 연가보상비 : 429,990원
 - $\Rightarrow 1,505,000\text{원}(175\text{만원} \times 86\%) \times 1/30 \times 1/7 \times 60\text{시간} = 429,990\text{원}$

(2) 연도 중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등으로 또는 시간선택제 등에서 전일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.

* 연가보상비

: 12월 31일(또는 퇴직일 전일)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$86\% \times 1/30 \times \text{연가보상일수}(20일 이내)$

- * 봉급표 상의 월봉급액은 전일 근무시의 월봉급액임.
- *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%(성과급적 연봉제 대상공무원 중 과장급이 아닌 5급(상당) 공무원은 84%)를 기준으로 하며, 이때 전일 근무시의 연봉월액임.
- * 연가보상일수 = 미사용연가일수 $\times [12개월 - \text{제외기간(개월)}] / 12개월$
- * 제외기간 산정은 $[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상의 주당근무시간 - 주당 시간제근무시간] /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주당 시간 \times \text{시간제근무개월수}$
- * 그 외에 전일근무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을 준용함.

바) 초과근무수당

- (1)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·지급방법·인정범위 등은 해당 직급의 전일근무공무원과 동일하다.
- (2)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로서 출근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(10시간 × 지급단가)으로 지급하고, 출근근무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.

예시

-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(9급)이 월간 15시간의 시간외근무 실적이 있고 월 13일을 출근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
 - ☞ 지급액 : 192,090원
 - ⇒ 실적분 : 125,350원 = 8,357원 × 15시간
 - 정액분 : 72,430원 = (8,357원 × 10시간) - (8,357원 × 10시간 × 2/15)
 - ※ 각각의 계산에 대하여 10원 단위 이하 절사

사) 기타 수당 등

-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.

$$\text{- 지급액} = \frac{\text{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지급액}}{\text{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}} \times \frac{\text{『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』상 주당 근무시간}}{\text{『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』상 주당 근무시간}}$$

- * “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”은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으로 정될 때의 주당 근무시간을 말함.

예시

-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(5급)에 대한 직급보조비 지급액
 - ☞ 93,750원(10원 단위 이하는 절사) = 250,000원 × (15시간 / 40시간)

아) 특수직근무수당

(1) 지급대상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
 - *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의2 제2호, 제3조의3 또는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 공무원(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 제11조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 포함)

(2) 지급액

- * 지급액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
 -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: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%
 - 근무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: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8%
 - 근무기간은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된 이후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해 되, 강등·정직처분, 직위해제처분 및 휴직(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)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. 다만,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(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)은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.

5) 결근시 감액지급방법

가) 특수지근무수당, 위험근무수당, 특수업무수당, 업무대행수당, 직급보조비는 결근 시간에 대하여 수당 등의 시간당 단가를 감액 지급

$$- \text{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시간당 단가} = \frac{\text{해당 월의 수당액}}{\text{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상 월간 근무시간}}$$

예시

-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(9급)이 결근하여 해당 공무원의 연가 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결근한 경우 해당 월의 직급보조비 지급액(복무규정상 해당 월의 근무시간이 176시간인 경우)
 - ☞ 직급보조비(9급) : 125,000원
 - ☞ 시간당 직급보조비 : 710원
 - ⇒ $125,000\text{원} \div 176\text{시간} = 710\text{원}$
 - ☞ 해당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지급액 : 55,400원
 - ⇒ $62,500\text{원}(월액) - 7,100\text{원}(710\text{원} \times 10\text{시간}) = 55,400\text{원}$
 - * 월액(62,500원)= $125,000\text{원} \times (20\text{시간}/40\text{시간})$

나) 정액급식비

-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정액급식비의 감액은 다음의 산식의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

$$- \text{감액} = \frac{\text{정상근무시}}{\text{지급액}} \times \frac{\text{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월중 결근일수}}{\text{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상의 월간 출근근무일수}}$$

* “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상의 월 출근근무일수”는 해당 월의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근무일수를 말함.

예시

-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지정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상의 근무일수가 22일인 월에 연가를 초과한 결근일수가 3일인 경우 정액급식비 지급액은?
 - ☞ 시간제근무공무원 정액급식비 : 104,000원
 - ⇒ $130,000\text{원} \times (4일/5일)$
 - ☞ 결근으로 감액할 금액 : 17,720원(10원 단위 이하는 절사)
 - ⇒ $130,000\text{원} \times (3일/22일)$
 - ☞ 정액급식비 지급액 : 86,280원
 - ⇒ $104,000\text{원} - 17,720\text{원} = 86,280\text{원}$

*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일근무 공무원의 예에 의함.

6) 연봉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 되었을 때 지급 방법

- 연봉제 공무원이 연봉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

□ 승급기간의 계산(영 제12조제1항, 제14조) (지침 p.45)

-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3)의 승급기간계산
 -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단위로 산입 한다.
 - * 다만, 영 개정 시('14.1.8)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승급기간 계산에서 제외함.

예시

- 2012.8.1. 기준 7급5호봉(잔여기간 8월, 차기승급일 : 2012.12.1.)인 자가 2012.8.10자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(주당 20시간 근무)으로 지정될 경우 차기 또는 차차기 승급일은?

< 규정 개정 前 적용시 >

-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승급기간 전부 산입 : 2012.8.10.~2013.8.9.(1년)
 - ☞ 7급 6호봉 승급일 : 2012.12.1.(잔여기간 없음)
 - ☞ 2013.8.9. 기준 : 7급6호봉(잔여기간 8월8일) * 차기승급일까지 잔여기간 3월22일

$$\frac{\text{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}}{\text{근무기간}(6월44일-7월14일)} \times \frac{\text{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}(20시간)}{40시간} = 3\text{월}22\text{일}$$

- 2013.8.10.~2014.3.23.(7월14일)에 대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 산입 : 3월22일
 - ☞ 7급 7호봉 승급일 : 2014. 4. 1.(잔여기간 8일)

< 규정 개정 後 적용시 > * '14.1.8.자 시행

-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승급기간 전부 산입 : 2012.8.10.~2013.8.9.(1년)
 - ☞ 7급 6호봉 승급일 : 2012.12.1.
 - ☞ 2013.8.9. 기준 : 7급6호봉(잔여기간 8월8일) * 차기승급일까지 잔여기간 3월22일
- 규정 개정에 따라 '14.1.8전까지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승급기간 계산에서 제외 됨으로 2013.8.10.~2014.1.7.(4월28일)에 대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 산입 : 2개월14일

$$\frac{\text{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}}{\text{근무기간}(4개월28일)} \times \frac{\text{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}(20시간)}{40시간} = 2\text{개월}14\text{일}$$

- ☞ 2014.1.7. 기준 : 7급6호봉(잔여기간 8월8일) + 2월14일 = 7급6호봉(잔여기간 10월22일)
 - 규정 개정에 따라 '14.1.8일부터는 전 기간을 승급기간 산입함으로 1개월8일 경과후 차기승급 실시
 - ☞ 7급 7호봉 승급일 : 2014.3.1.(잔여기간 14일)

□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연수 계산 (지침 p.264)

다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

- (1)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(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)
- (2) '13.12.31. 이전의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전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하되,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

예시

- 전일제 공무원으로 '11.3.1~'11.12.31(10개월) 근무하고,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'12.1.1~'13.12.31(2년) 근무하고,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'14.1.1~'16.6.30(2년 6개월) 근무할 경우 '16.7.1. 현재 근무연수 : 4년 10개월
 - '14.1.1. 이전의 근무기간 : 근무연수에 2년 4개월 산입
 - * 전일제 근무경력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(10개월)
 - * 시간제 근무경력은 최초 1년('12.1.1~'12.12.31)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하지만(1년), 그 이후의 근무기간('13.1.1~'13.12.31)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($6\text{개월} = 1\text{년} \times 20/40$)
 - '14.1.1. 이후의 근무기간 : 근무연수에 2년 6개월 산입
 - * 시간선택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, 전일제와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(2년 6개월)

□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연봉 (지침 p.198)

-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(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, 시간제근무공무원 포함, 이하 이 장에서 같음)은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연봉을 책정한 후,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 · 지급

-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연봉

$$= \frac{\text{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(성과연봉 포함)} \times \frac{\text{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}}{40시간}}{40시간}$$

※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시간을 말하며, 주당 근무시간이 계약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말함.

〈 예시 〉

- 2018년 연봉이 60,000천원(기본연봉 56,000천원 + 성과연봉 4,000천원)인 공무원이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당 20시간 시간제근무를 하는 경우의 5월 연봉월액
 $\rightarrow 2,500천원 = 2018\text{년 연봉 } 60,000\text{천원} \times (20\text{시간} \div 40\text{시간}) \div 12\text{개월}$

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(지침 p.298)

- 가)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,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(이하 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 이 때,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 산정시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%(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 84%)를 기준으로 한다.

$$\frac{\text{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} 80\text{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} \times \frac{\text{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-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}}{\text{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}}}{(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,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)}$$

- 나)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’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지정을 위한 신청시, 신청서 신청 사유란에 육아를 목적으로 함을 기재하고,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- 다. 지급기간 : 휴직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(다만,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)

3) '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'란 최초 지정일로부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*를 말함. 따라서, 동일자녀에 대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(1년 미만)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(잔여기간)한 경우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(1년)후 그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근무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을 지급한다.

* 단, 제도 도입('15.1.1.) 이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, 이후의 기간부터 기산한다.

예시

- 같은 자녀에 대해 '16.4.1부터 '16.8.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하고 '17.2.1일부터 '17.12.31까지 육아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(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 4개월)
 -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('16.4.1)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이므로, '16.4.1~8.31까지의 5개월에 대하여 지급
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 기간은 1년이내이나,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급가능하므로,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5개월을 제외한 7개월에 대하여 지급

예시

-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공무원이 '14.9.1부터 '15.12.31까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(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4개월)
 - '15.1.1~12.31까지의 12개월에 대하여 지급
 - 육아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내이나, 제도 도입('15.1.1) 이후부터 1년을 인정하므로 12개월 지급 가능

라. 지급방법

1) 지급시기 : 보수지급일

2) 지급액은 휴직발령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※ 2011.1.1.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1.1.1.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.

※ 2018.1.1. 현재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8.1.1.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한다.

3) '16.1.1.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: '16.1.1.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, 최초 3개월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월봉급액의 100%(최대 150만원) 지급

예시

- 공무원이 '15.7.1.~'15.7.31.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(월봉급액의 100%, 최대 150만원 지급)하고 복직 후, '16.2.1.~4.30.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: 2.1.~3.31.까지 두달분에 대해 추가로 월봉급액의 100%(최대 150만원) 지급
- 공무원이 '15.7.1.~9.30.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(7.1.~7.31.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%, 최대 150만원 지급)하고 '16.2.1.~4.30.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: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이 3개월 경과하였으므로 월봉급액의 40%(최대 100만원) 지급('15.8.1.~9.30.의 육아휴직에 대해 수당 소급 지급 불가)
- 공무원이 '15.11.1.~'16.4.30.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(11.1.~11.30.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%, 최대 150만원 지급 / 12.1.~12.31.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40% 지급)한 경우 :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3개월 까지 지급하므로 '16.1.1.~1.31.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%,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, 2.1.~4.30.의 기간에는 월봉급액의 40% 지급('15.12.1.~12.31.의 육아휴직에 대해 수당 소급 지급 불가)

- 4) '17.9.1. 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: '17.9.1. 기준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, 최초 3개월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월봉급액의 80%(최대 150만원, 최소 70만원) 지급

마. 정 수

-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.

예시

- 일반직 8급 3호봉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 대신 '18.1.1~6.30까지 6개월간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
 - '18.1.1~6.30(6개월간) : 월 700,320원 지급 ※ 봉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별도 지급
 - ① 1,400,640원 :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시 8급 3호봉 기본급(1,750,800원)의 80퍼센트 해당금액 (하한 50만원~상한 150만원)
 - ② 700,320원 : ①(1,400,640원) × [(40시간-20시간)/40시간]*
 - * [(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(40시간)- 시간선택제전환 주당 근무시간 (20시간) /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(40시간)

업무대행수당(영 제14조의2) (지침 p.317)

가. 지급대상
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8조의16에 따라 병가, 출산휴가, 유산휴가,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·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
 - *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8조의16제2항에 따른 병가,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

나. 지급액 및 지급방법 : 월 20만원

-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명인 경우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

$$\text{월 지급금액} = \text{월 } 20\text{만원} \times \frac{1}{\substack{\text{업무대행} \\ \text{지정인원수}}}$$

-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·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

$$\text{월 지급금액} = \text{월 } 20\text{만원} \times \frac{\substack{\text{업무대행자의} \\ \text{실제 주당근무시간}}}{40\text{시간}} \times \frac{1}{\substack{\text{업무대행} \\ \text{지정인원수}}}$$

* 업무대행자의 실제 주당근무시간 : (40시간 -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·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)을 의미

예시

-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
 - 1인이 대행하는 경우 :
 $20\text{만원} \times 20\text{시간}/40\text{시간} = 10\text{만원}$
 - 2인이 대행하는 경우 :
 $20\text{만원} \times 20\text{시간}/40\text{시간} \times 1/2 = 1\text{인당 } 5\text{만원씩 지급}$

< 참고사항 >

[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]

3. 업무대행공무원

가. 지정범위

- 원칙적으로 1명을 지정하고, 특히 필요한 경우 5명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하되,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3명 이하로 지정
 - 지정시에는 '피업무대행공무원', '대행기간', '대행업무'를 명시하여야 함

나. 지정 및 해제 명령

- 업무대행기간의 만료, 출산휴가·육아휴직 공무원의 복직, 시간선택제근무공무의 지정해제 또는 결원보충,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, 사유발생일자로 업무대행 해제